

노원구보

노원구 홈페이지 | www.nowon.kr

제2345호

2026. 9. 23.(수)



노원구 전경

- ※ 노원구보 게재를 의뢰하는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 ◎ 구보의 게재내용은 발행당일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won.kr> (노원소개→알림마당→노원구보)>
- ◎ 구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 때에는 다음날 발행합니다.
- ◎ 구보는 서울특별시노원구구보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합니다.
- ◎ 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116-3414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행인 : 노 원 구 청 장
편집인 : 미디어홍보담당관 정 윤 경
전 화 : 02-2116-3414

차 례

조 례

- 제208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3
- 제209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제209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 제209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제209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 제209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규 칙

- 제99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5
- 제993호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 37

고 시

- 제2026-78호 마들대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 38

공 고

- 제2026-1597호 공인 등록 공고 41
- 제2026-161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42

인 사

조 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서 준 오 (인)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2089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
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제6조(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제3항에 따른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구청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필요시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포함한 감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민간전문가 자문)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기술적·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대상 집합건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전문가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구청장은 자문에 응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 등) ① 구청장은 감독의 실시 중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제6조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감독 결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독 결과를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도 감독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서 준 오 (인)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209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율방범활동”이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자율방범활
동을 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자율방범활동”이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생략) <u><신설></u> <u>②·③</u> (생략)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서 준 오 (인)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2091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을 보좌하고”를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
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를 “처
리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u>위원장을 보좌하고</u>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u>처리하기</u> <u>위해 전문위원을 둔다.</u> ② · ③ (생략)	제4조(전문위원) ① ----- -- <u>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u> <u>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u> <u>원을 두며, ----- 처리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서 준 오 (인)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209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할인보전금”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본문 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⑤ 구청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 중 구의 재원 부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취소하여야”를 “취소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서는 아니”를 각각 “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요구하여서는 아니”를 “요구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하여서는 아니”를 “유통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60이상”을 “60 이상”으로, “응하여야”를 “응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처리하여야”를 “처리해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인액”을 “할인보전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환급되지 아니한 본인부담금과 할인보전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u>할인보전금</u> ”이란 사용자가 <u>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u>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생략)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의 <u>범위</u>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u>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u> 일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범위</u> ----- ----- ----- ③ ----- ----- <u>구</u> ----- ----- -----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
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
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구
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
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설치 · 운영해

야 한다.

_____ 관리해

야 _____

② -----

-- 공개해야 ----.

<신 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4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⑤ 구청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 중 구의

제5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생략)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4. (생략)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재원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5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

----- 제출해야 -----.

----- 하려는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않은 -----

3. 4. (현행과 같음)
5. -----
----- 않은 -----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생략)

④ 구청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⑥ (생략)

⑦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개별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공
개해야 ----.

⑤ -----

----- 취소
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

----- 공개해야 -----.

제6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

해서는 안 -----.

1. · 2. (현행과 같음)

② -----
----- 해서는 안 -----
--.

1. · 2. (생 략)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운영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구매건별 구매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

1. · 2.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

----- 요구해서는 안 ----
-----.

② -----

----- 유통해서는 안 -----
-----.

제8조(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개해
야 ----.

③ -----

-- 제출해야 ----. -----

--.

④ -----

----- 60 이상-----

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조의 범위 내에서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2. (생략)

----- 응해야 -----

----. -----

----- 범
위-----
-----.

⑤ -----

----- 처
리해야 ----.

제12조(환수 조치) -----

----- 할인보전
금 -----
-----.

1. 2.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서 준 오 (인)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2093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천재지변·재해”를 “천재지변·재해 및 급격한 경제여건 변
화”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비상 시”를 “비상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 ①·② (생략)	제7조(기금의 용자대상 및 용자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u>천재지변·재해</u>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용자계획 공고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의 범위 내에서 특별 긴급 용자를 할 수 있다.	③ ----- <u>천재지변·재해 및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u>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재난 피해 용자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의 발생 등 <u>비상시</u>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용자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재난 피해 용자지원) ① ----- ----- ----- ----- ----- <u>비상시</u>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서 준 오 (인)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2094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원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159조에 따라”를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노원구”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의 수익금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
다.

제3조제1항 중 “도시계획국장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처리하여야”를 “회계처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를 “구 금고에 예치·관리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노원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 “운용관리를”을 “관리·운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도로굴착 업무 담당 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굴착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명”을 “11명”으로, “구성하며,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운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2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를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소속 기금 운용 관련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3.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운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의3부터 제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4(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5(간사)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굴착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의6(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노원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u>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u> ----- ----- ----- <u>위하여</u> ----- ----- ----- ----- --.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 ----- ----- -----.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u>노원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u>	1. ----- <u>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그 밖의 수익금</u>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u>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u> 」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도시계획국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토목과장으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생략)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4. (생략)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
-----.

② -----
-- 회계처리해야 ----.

③ ---- 구금고에 예치·관리해야 ----.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관리·운용을 -----

----.

② ----- 도로굴착 업무 담당 과장----- 도로굴착 업무 담당 팀장-----
-----.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4.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운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2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신 설>

③ -----
----- 11명 -----
-----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소속 기금 운용 관련 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3.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운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
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
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
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
촉 해제 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6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
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
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
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4(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
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
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
최한다.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2호의 사업 중 단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6조의5(간사) 심의회에 심의회
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굴착 업무 담
당 팀장이 된다.

제6조의6(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신 설>

<신 설>

제7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기금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의 기금운용결산서 및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다
음 회계연도 80일 이내에 구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운용결산서 및 해당연도 기금운
용계획서를 보고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
라 이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익·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
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규 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서 준 오 (인)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992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
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긴급 용자대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 용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을 말한다. 1. · 2. (생략) <u><신설></u> 3. (생략)	제10조(긴급 용자대상) ----- ----- ----- -----. 1. · 2. (현행과 같음) <u>3.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u> 4. (현행 제3호와 같음)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노원구청장 서 준 오 (인)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노원구규칙 제993호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6-78호

마들대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5번지 일대 마들대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마들대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노원구청장

1.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사항

가. 구역경계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5번지 일대

나. 구역면적 : 28,818.1㎡

다. 사무실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5번지 5동 5호

라. 토지등소유자 수 : 555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함

마.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연 번	직 책	성 명	주소(소유물권)
1	위원장	김학수	5동
2	감사	김선규	5동
3	추진위원	김종두	1동
4	추진위원	유충현	1동
5	추진위원	김희영	1동
6	추진위원	강재희	1동
7	추진위원	정화자	1동
8	추진위원	김문한	1동
9	추진위원	윤연구	1동
10	추진위원	정창식	1동
11	추진위원	진영익	1동
12	추진위원	진희례	1동
13	추진위원	임창래	1동
14	추진위원	권순형	1동

연 번	직 책	성 명	주소(소유물권)
15	추진위원	이상규	1동
16	추진위원	강희근	1동
17	추진위원	한현수	1동
18	추진위원	박소현	1동
19	추진위원	박학순	2동
20	추진위원	김인희	2동
21	추진위원	이향숙	2동
22	추진위원	곽창수	2동
23	추진위원	강구현	2동
24	추진위원	이순옥	2동
25	추진위원	최일순	2동
26	추진위원	이종란	2동
27	추진위원	윤탈리	2동
28	추진위원	강병일	2동
29	추진위원	김흥범	2동
30	추진위원	김도형	2동
31	추진위원	최재숙	2동
32	추진위원	조미영	2동
33	추진위원	윤정숙	2동
34	추진위원	김병래	2동
35	추진위원	김태련	3동
36	추진위원	신향미	3동
37	추진위원	김남준	3동
38	추진위원	김학성	3동
39	추진위원	김민재	3동
40	추진위원	한진희	3동
41	추진위원	정문교	3동
42	추진위원	나옥주	3동
43	추진위원	김정아	3동
44	추진위원	이춘자	3동
45	추진위원	김명수	3동
46	추진위원	허범	3동
47	추진위원	이윤옥	3동
48	추진위원	김영윤	3동
49	추진위원	김유선	3동
50	추진위원	박문자	5동
51	추진위원	박온수	5동
52	추진위원	조용희	5동
53	추진위원	김창덕	5동
54	추진위원	박민석	5동
55	추진위원	이상완	5동
56	추진위원	이병국	5동
57	추진위원	이재광	5동
58	추진위원	이동신	5동
59	추진위원	이양규	5동
60	추진위원	손경숙	5동

2.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일자 : 2026년 9월 16일

3. 위치도 및 정비구역 결정(안)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공 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1597호

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조례」 제8조(공인의 등록)에 의거 상계1동의 공인을 등록하고 그 사항을 동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노 원 구 청 장

1. 공 고 명 : 공인 등록 공고
2. 공고내용 : 노원구청장인상계1동민원사무전용3(중)의 공인 등록

구분	공인명	인영	서체	규격(cm)	등록일	사유
등록	노원구청장인상계1동 민원사무전용3(중)		훈민정음 해례본체	2.4*2.4	2026. 9 11.	민원 창구 확대에 따른 직인 추가 등록
등록	노원구청장인상계1동 민원사무전용3(형)		훈민정음 해례본체	2.4*2.4	2026. 9 11.	민원 창구 확대에 따른 직인 추가 등록

3.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
4. 공고방법: 구보 게재
5.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 02-2116-324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161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노 원 구 청 장

1. 개정이유

문화시설 현황 및 문화시설 사용료 등 종류 및 징수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에 노원아트뮤지엄, 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 추가

(안 별표 1)

나. 문화시설 사용료 등 종류 및 징수기준 정비(안 별표 2)

- 불암산아트포레 갤러리 대관료 추가 / 상계예술마당 대관료 변경 /

노원 기차마을 입장료 감면기준/ 중계온마을센터 시설 사용료 할인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참조 문화도시과장,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02-2116-7136, FAX: 02-2116-4630, email: soyeon2@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문화시설 현황 및 문화시설 사용료 등 종료 및 징수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에 노원아트뮤지엄, 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 추가

(안 별표 1)

나. 문화시설 사용료 등 종류 및 징수기준 정비(안 별표 2)

- 불암산아트포레 갤러리 대관료 추가 / 상계예술마당 대관료 변경 / 노원기차마을 입장료 감면기준/ 중계온마을센터 시설 사용료 할인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규제사전심사 : 대상아님

4) 위원회 관련 사전협의 : 대상아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대상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제3조 관련)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회의실, 사무실, 연습실, 전시실, 문화강좌실, 주차장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81(중계동)
노원어린이극장	공연장, 사무실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2(상계동)
수락홀 문화공연장	문화공연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859(상계동) 지상5층
구청 대강당	문화공연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지상2층
구청 소강당	문화공연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지상6층
상계예술마당	다목적실, 회의실, 사무실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0길 41-7 (상계동)
보건소 다목적강당	문화공연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노원구보건소 지상5층
경춘선숲길 갤러리	전시실, 사무실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9-4 일대
문화공간 정답	소규모 전시 및 공연공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69 (중계동)
노원기차마을	전시관, 체험관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9-53 일대
중계온마을센터	강당, 커뮤니티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371(중계동) 지상2층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	강의실, 조리체험실, 사무실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81, 6층(중계동)
불암산아트포레 갤러리	전시실, 창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37
노원아트뮤지엄	전시실, 수장고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81(중계동) 지상4층

[별표 2]

문화시설 사용료 등 종류 및 징수기준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관련)

1.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노원아트뮤지엄 시설 사용료**가. 일반기준**

- (1)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이다.
- (2)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3) 대공연장·소공연장 시설 사용료는 무대 공연을 목적으로 산술한 금액이다.
-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5)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 마다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 (6)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과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전날의 야간(철야포함) 작업에 따른 기본 사용료는 개별기준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7) 사용료의 할인율: 100분의 50 이내
- (8) 소공연장은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일반 행사(각종강의, 설명회)로 사용할 수 있다.
- (9) 전시실은 문화예술작품 및 장비 설치가 가능하며 작품 철수 시 설치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10) 주차장의 주차료는 개별기준으로 한다.
- (11) 대관 승인 통보일 후 7일 내 대관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나. 개별기준

(1) 대공연장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회 3시간	450,000원	부가세 별도
무대	피아노	STEINWAY(D274)	1회 3시간	80,000원	조율비 별도 (극장 측 지정 조율사)
		Bechstein(C-91)	1회 3시간	50,000원	
	덧마루		1일	50,000원	대관자 테이핑 및 설치·철수
	댄스플로어		1일	200,000원	
	포맥스 (검정바닥재)		1일	200,000원	
	음향반사판		1일	50,000원	
	오케스트라피트		1회 작동	50,000원	
	승강무대		1회 작동	50,000원	
음향	유선마이크	다이나믹	1일	개당 5,000원	기본 4개(설치포함)
		컨텐서		개당 10,000원	
	무선마이크		1일	개당 20,000원	핸드, 핀 동일 (건전지 및 소모품 별도)
	모니터 스피커		1일	개당 20,000원	기본 2개
	빔프로젝터		1일	200,000원	EPSON EB-PQ2220B (22,000ansi / 4K)
조명	녹화		1회	30,000원	HD/저장 미디어 별도
	팔로우 조명 (Follow Spot Light 2KW)		1대/1일	30,000원	인건비 별도
	포그머신		1대/1일	20,000원	포그액 별도
	무빙라이트		1대/1일	30,000원	대관자 설치·철수
기타	조명콘솔		1대/1일	50,000원	인건비 별도
	냉난방비		1회	시간당 50,000원(냉방) 시간당 60,000원(난방)	부가세 별도
	디자인료 (무대, 음향, 조명)		1작품	각 500,000원	

※ 단, 일반행사(비 예술행사)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50%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 공연진행 인원(무대, 조명, 음향, 티켓, 하우스 어서)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 대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2) 소공연장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회 3시간	240,000원	부가세 별도
무대	피아노 Yamaha(C7)	1회 3시간	50,000원	조율비 별도 (극장 측 지정 조율사)
	덧마루	1일	50,000원	대관자 테이핑 및 설치·철수
	댄스플로어	1일	150,000원	
음향	유선 마이크	1일	개당 5,000원	기본 4개(설치포함)
	다이나믹 컨텐서		개당 10,000원	
	무선마이크	1일	20,000원	핸드, 핀 동일 (건전지 및 소모품 별도)
	모니터 스피커	1일	20,000원	기본 2개
	빔프로젝터	1일	100,000원	BARCO F804K9 (4K / 9,000ansi)
조명	녹화	1회	30,000원	HD/저장 미디어 별도
	포그머신	1대/1일	20,000원	포그액 별도
	조명콘솔	1대/1일	30,000원	인건비 별도
기타	냉난방비	1회	시간당 20,000원(냉방) 시간당 25,000원(난방)	부가세 별도
	디자인료 (무대, 음향, 조명)	1작품	각 500,000원	

※ 단, 일반행사(비 예술행사)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50%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 공연진행 인원(무대, 조명, 음향, 티켓, 하우스 어셔)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 대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전시실

구 분	단 위	기본 사용료	비 고
전시실	1일 (10:00~18:00)	80,000원	

※ 전시실 안전 관리요원 인건비는 대관자 부담으로 한다

(4) 연습실

구 분	단 위	기본 사용료	비 고
연습실1	1회 3시간	30,000원	
연습실2		20,000원	
피 아 노	1회 3시간	10,000원	

(5) 다목적룸 · 회의실 · 문화강좌실

구 분	단 위	기본 사용료	비 고
다목적룸	1회 3시간	50,000원	1. 비 문화행사 사용료는 문화행사 사용료에 50%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2. 야간(18:00~)행사시 20%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회의실		30,000원	
문화강좌실		30,000원	
영상장비	1회 사용	20,000원	

(6) 주차료

구 분	주 차 료	비 고
○ 대·소공연장 관람자	○ 공연시간 포함 전, 후 1시간 1,000원	
○ 전시장 관람자	○ 2시간 무료	
○ 문화강좌 수강생 ○ 구립예술 단체 ○ 자원봉사자(예원회)	○ 이용 시간 포함 전, 후 1시간 무료	
○ 면제차량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 시설사용 행사차량 : 5대까지	
○ 공연신청 방문자 등	○ 1시간 무료	
○ 행사 관계자 등	○ 1일 4,000원	
○ 기타차량	○ 5분당 250원	
○ 정기 주차권	○ 대당 월 100,000원	

<비고>

1.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 공연, 전시, 행사 등으로 주차

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하되, 공연, 전시, 행사 등으로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7)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월 5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2. 노원어린이극장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액수이다.
- (2)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 사용료는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3) 공연장 시설 사용료는 무대 공연을 목적으로 산술한 금액이다.
- (4)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5)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 마다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 (6)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과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전날의 야간(철야포함) 작업에 따른 기본 사용료는 개별기준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7) 사용료의 할인율: 100분의 50 이내
- (8) 대관 승인 통보일 후 7일 내 대관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나. 개별기준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회 3시간	300,000원	부가세 별도
무대	피아노 Yamaha(C7X PE)	1회 3시간	50,000원	조율비 별도 (극장 측 지정 조율사)
	덧마루	1일	50,000원	대관자 테이핑 및 설치·철수
	댄스플로어	1일	200,000원	
	이동식 합창단	1일	100,000원	
음향	유선 마이크	다이나믹 컨텐츠	1일 개당 5,000원 개당 10,000원	기본 4개(설치 포함)
	무선마이크	1일	개당 20,000원	핸드, 핀 동일 (건전지 및 소모품 별도)
	모니터 스피커	1일	개당 20,000원	기본 2개
	빔프로젝터	1대/1일	150,000원	BARCO F904K12 (4K / 12,000ansi)
	녹화	1회	30,000원	HD/저장 미디어 별도
조명	팔로우조명 (Follow Spot Light 1.2KW)	1대/1일	30,000원	인건비 별도
	포그머신	1대/1일	20,000원	포그액 별도
	드라이아이스머신	1대/1일	20,000원	드라이아이스 별도
	무빙라이트	1대/1일	30,000원	대관자 설치·철수
	조명콘솔	1대/1일	30,000원	인건비 별도
기타	냉난방비	1회	시간당 45,000원(냉방) 시간당 40,000원(난방)	부가세 별도
	디자인료 (무대, 음향, 조명)	1작품	각 500,000원	

※ 단, 일반행사(비 예술행사) 사용료는 예술행사 사용료에 50% 추가한 요금으로 한다.

※ 공연진행 인원(무대, 조명, 음향, 티켓, 하우스 어서)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 대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3. 수락홀 문화공연장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
-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3)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

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4) 1일(9시간) 사용 시 사용료는 130,000원으로 한다.

나. 개별기준

○ 문화공연장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회 3시간	30,000원	※ 혼례식 및 전시실로 대관 시 사용료 동일 ※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연습 또는 작업 시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음향장비	1회 3시간	10,000원	
냉·난방	1회 3시간	30,000원	

4. 구청 대강당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
-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3)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 (4) 전시목적으로 1일(9시간) 사용 시 사용료는 80,000원으로 한다.
- (5) 체육공간으로 사용 시 1시간당 사용료는 20,000원으로 한다.

나. 개별기준

○ 구청 대강당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회 3시간	100,000원	※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연습 또는 작업시간 포함
음향장비	1일 1회	20,000원	
냉·난방	1회 3시간	60,000원	

5. 구청 소강당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
-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3)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나. 개별기준

○ 구청 소강당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회 3시간	60,000원	※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연습 또는 작업시간 포함
음향장비	1일 1회	20,000원	
냉·난방	1회 3시간	20,000원	

6. 상계예술마당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운영일과 시간 및 휴관은 노원문화재단 내부지침에 따른다.
- (2) 기본 사용시간은 1일로 하며,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 (3) 1일 사용 시 사용료(대관료)는 50,000원으로 한다.

- (4) 작품전시 등을 위한 설치 및 행사준비를 위한 전날 작업에 따른기본
사용료는 개별기준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5) 사용료의 할인율: 100분의 50 이내
- (6) 전시와 공연 등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작품 및 장비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및 철수 시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7)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대관할 수 있다.
 - (가) 공익적인 목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문화예술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8)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대관할 수 없다.
 - (가) 개인의 이득을 위한 상업성을 가지는 경우
 - (나) 종교적인 활동을 위한 목적일 경우

나. 개별기준

○ 다목적실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일	50,000원	※ 전시 및 행사준비를 위한 연습 또는 작업시간 포함

7. 보건소 다목적강당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
-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
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3)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
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
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4) 전시목적으로 1일(9시간) 사용 시 사용료는 80,000원으로 한다.

(5) 체육공간으로 사용 시 1시간당(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 사용료는 20,000원으로 한다.

나. 개별기준

○ 보건소 다목적강당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회 3시간	80,000원	※ 체육공간으로 사용 시 1시간당 대관료는 20,000원으로 함
음향장비	1일 1회	20,000원	
냉·난방	1회 3시간	40,000원	※ 체육공간으로 냉난방 사용 시 1시간당 사용료는 12,000원으로 함

※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연습 또는 작업시간 포함

8. 경춘선숲길 갤러리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

(2) 기본사용시간은 1일로 하며,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1일 사용 시 사용료(대관료)는 50,000원으로 한다.

(4) 작품전시 등을 위한 설치 및 행사준비를 위한 전일 작업에 따른 기본 사용료는 개별기준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5) 사용료의 할인율: 100분의 50 이내

(6) 운영일과 시간 및 휴관은 노원문화재단 내부지침에 따른다.

나. 개별기준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일	50,000원	※ 전시 및 행사준비를 위한 연습 또는 작업시간 포함

9. 문화공간 정담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 (2) 대관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 (3) 전시와 공연 등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작품 및 장비 설치가 가능하며
작품 철수 시 설치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원구민의 쉼터의 목적으로 리모델링한 공간이므로 작품 설치
및 공연 장비의 배치보다 주민들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설치된 의자,
테이블 등의 배치를 우선해야 한다.
-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대관할 수 있다.
 - (가) 공익적인 목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문화예술을 목적으로 시설을 단시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운영일과 시간 및 휴관은 노원문화재단 내부지침에 따른다.

10. 노원기차마을 시설 사용료

(1) 입장료

구 분	금 액(원)	비고
어른	4,000	▪ 19세 이상 ~65세 미만
어린이 · 청소년	2,000	▪ 12개월 이상 ~ 18세 이하

(2) 입장료의 감면 기준

할인율	대 상
50%	1. 노원구민[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 이용일을 기준으로 구 소재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3. 노원기차마을 유립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원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사업 추진에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외국 정부기관,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 문화원 등과 국제교류를 하는 국가의 국민 4. 10인 이상 단체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

11. 중계온마을센터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
- (2)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3)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

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4) 전시목적으로 1일(9시간) 사용 시 사용료는 80,000원으로 한다.

(5) 사용료의 할인율 : 100분의 50 이내

나. 개별기준

○ 강당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회 3시간	50,000원	※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연습 또는 작업시간 포함
음향장비	1일 1회	20,000원	
빔프로젝터	1일 1회	20,000원	
냉·난방	1회 3시간	40,000원	

○ 커뮤니티실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회 3시간	20,000원	※ 전시 및 행사준비를 위한 연습 또는 작업시간 포함
음향장비	1일 1회	20,000원	
빔프로젝터	1일 1회	20,000원	
냉·난방	1회 3시간	20,000원	

12.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 수강료

구 분	수 강 료	비 고
문화강좌	회당 20,000원 이하	재료비는 본인 부담 가능

13. 불암산아트포레 갤러리 시설 사용료

가. 일반기준

(1) 개별기준의 기본 사용료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

(2) 기본사용시간은 1일로 하며, 1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1일 사용 시 사용료(대관료)는 50,000원으로 한다.

(4) 작품전시 등을 위한 설치 및 행사준비를 위한 전날 작업에 따른 기본 사용료는 개별기준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5) 사용료의 할인율: 100분의 50 이내

나. 개별기준

구 분	기본 사용시간	기본 사용료	비 고
대 관 료	1일	50,000원	※ 전시 및 행사준비를 위한 연습 또는 작업시간 포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인 사

노 원 구

(발령 제255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직 급
1	양 문 숙	근무기간 만료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근무기간 : 2022. 9. 29. ~ 2026. 9. 28.)	마더어홍보담당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2026. 9. 29.字.